

프랑크푸르트 한국학교 교칙

프랑크푸르트 한국학교 교칙은 학교 구성원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학교생활에서 교육목적에 맞게 꼭 지켜야 할 내용을 규정하며 헤센주 학교법의 기본 사항을 준수합니다.

프랑크푸르트 한국학교의 교칙은 그동안 학교 각 부분에서 실행해 오던 기본규칙에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현재 학교 상황에 맞게 다듬어 프랑크푸르트 한국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후 승인했으며 2025 년 11 월부터 학교에 알리고 공유해 규칙을 적용합니다.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며 만나는 교육의 장소입니다. 프랑크푸르트 한국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한글과 역사와 문화를 배워 세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의 규칙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일반규칙

- 1.1 프랑크푸르트 한국학교의 (KSF) 국어 정규수업은 매주 토요일 9:00-11:50 까지 진행하며 한국어부의 한국어 정규수업은 오후 12:30-15:20 까지 진행합니다.
초등부의 오후 과목 수업은 개인 신청제이며 오후 12:30-14:20 까지 계속됩니다.
태권도반이나 미술반 등 특별활동 수업도 개인 신청제이며 오후 12:30-14:00 까지 진행합니다.
- 1.2 학교의 정문은 학기 중 매주 토요일 아침 8:15 분부터 열립니다. 교무실은 매주 토요일 8:00-17:00 까지 개방합니다(프랑크푸르트 한국학교는 토요일에 수업하는 주말학교이며 학교는 토요일 개방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3 학교의 정문과 후문의 차량은 등하교 시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해야 하며 안전 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히 등하교 시 혼잡한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 1.4 학생은 수업시간에 보호자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 1.5 학교는 폭력없는 공간으로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이나 장난감, 애완동물, 또는 모든 종류의 무기류를 금지합니다.
- 1.6 사고 방지를 위해 학교 건물 안에서는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등을 이용해 이동할 수 없으며 학교의 규정된 행사나 수업활동 외에 학교 건물 내에서 공놀이, 물건 던지기, 달리기, 매달리기 등도 금지합니다. 또 교실이나 학교에서 사용이 허락된 공간 외에 머물거나 숨지 않습니다.

- 1.7 불법 약물 및 모든 종류의 알콜 섭취도 금지합니다. 위반 시 즉시 학교에서 나가야 하며 운영진은 회의를 통해 추가조치를 결정합니다.
- 1.8 학교 운동장 및 교정에서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KSF 의 교사, KSF 의 학교운영진, Leibnizschule 김나지움의 관리인 및 독일학교 경영진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1.9 교내에서 학생에게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는 발생 즉시 학급담임이 교무실에 보고 하여야 하며 교무실에서는 학생을 안정시키고 학부모님께 알려야 합니다.
- 1.10 학교건물과 교내에서 모든 종류의 흡연은 금지합니다.

2. 학급편성과 수업

- 2.1 학생의 학급편성은 적절한 수업진행을 위하여 학생의 출생년도를 중심으로 하되 학습능력을 고려하여 이뤄집니다. 학생은 규칙적으로 수업에 출석해야 하며 학교의 최소 출석규칙을 별도로 참조합니다. 학기 중 출석률이 20% 를 넘지 않는 학생의 경우, 학생 성적평가에 기록되며 수료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또 반편성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학년말에 학급담임이 학부모 상담 후 학년 등급을 결정합니다.
(출석규칙 별도 참조 2025 년 4 월 공지): 2026 년 3 월 부터 최소 출석률 50% 이상 출석규칙이 적용됩니다.
- 2.2 각 학급의 담임교사는 매 학기 초에 해당 학급의 연간 학습목표와 학기 수업계획을 세워야 하며 학급의 학부모님께 해당학급의 학습목표와 수업계획서를 작성해 알려야 합니다. 수업계획서 전달은 메일로도 가능합니다.
- 2.3 학급담임은 한 학년에 한 번 매 학년 말에 학생의 학력 및 성적평가지를 배부합니다. 학력 및 성적평가지에는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 정도와 수업태도가 포함됩니다. 이는 학급담임이 작성하며 학교장이 서명한 후 학부모에게 전달하며 성인학생의 경우 학생에게 배부됩니다.
- 2.4 학교의 프로젝트 수업과 축제 및 공개수업에 교실은 개방되며 수업은 교사 및 학부모와 학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참관할 수 있습니다.
- 2.5 태권도, 미술반 등과 같은 특별활동은 최소한의 참가 지원자가 있고, 특별활동 지도교사, 수업장소 및 교육적, 경제적 요건이 충족될 때와 방과 후 12:30 부터 개설될 수 있습니다.

- 2.6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학부모가 수업 전에 교사에게 아동을 직접 인계한 시점부터 학부모에게 다시 인계할 때까지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 2.7 모든 학급의 학부모들은 학급담임의 참관하에 매 학년 초, 학급별로 반대표 학부모를 2 인 선출하며 이 학급대표 학부모는 학부모 총대표회에 회원이 됩니다. 학부모 총대표회의에서는 총대표와 총대표단을 선출합니다. 학부모 총대표회는 학부모들의 학교를 향한 교육적인 관심사를 대변하고 학교의 대내외행사를 돕습니다.
- 2.8 질서있는 교육보장을 위해 수업 중 아무도 예고없는 방문이나 수업방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를 보장할 책임은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부탁이나 학교의 허락없이 자녀가 수업받는 교실에 함께 머물 수 없습니다.
- 2.9 모든 학생과 교사는 수업시간에 껌을 씹거나 간식을 먹을 수 없으며 모자 등 머리를 덮는 물품은 쓸 수 없습니다.
- 2.10 학교의 학사일정은 교사 회의, 부장교사 회의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매년 1 월 마지막 수업일 이전까지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임의대로 학사일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3. 휴식시간

- 3.1 매 시간 휴식 시간은 10 분이며 휴식시간 중에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나갈 수 있으나 교문 밖으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모든 학생과 교사는 휴식시간 시작과 끝을 알리는 종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수업 종료와 시작 규칙을 정확하게 따라야 합니다.
- 3.2 특별한 재난 상황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안내는 학교장과 학교 운영진으로부터 제공됩니다.

4. 교실 사용

- 4.1 모든 학교의 구성원은 학교의 사용공간과 기구에 대한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으며 이 공간과 물품들은 사용 후 원상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 4.2 교실 및 학교공동의 사용 공간은 소중한 교육환경의 일부로 환경보호 및 보존에 기여하기 위해 바닥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과 쓰레기 분리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독일

학교의 임대계약에 위배되지 않게 교실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교실 안의 학습기기를 임의대로 사용하거나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4.3. 모든 학급에서는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마지막 수업 종료 후, 교실이 정리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 학교의 재산 관리

5.1 학교의 모든 시설,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는 학교장 및 학교운영진에 즉시 보고되어야 합니다.

5.2 학교에서 제공된 수업기기, 수업 및 학습자료, 도서 및 교육자료는 소중하게 다뤄야 하며 학교재산을 손상시키거나 분실할 경우 본인이 배상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6. 학부모 봉사 및 학습비와 학교 구성원의 갈등조정

6.1 학부모는 자의에 의해 학급이나 학교 행사에 필요시 재능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을 통하거나 개인의 의지로 학교 교육을 위해 후원금으로 학교를 후원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는 매 해 영수증을 발행 합니다.

6.2 유치부의 경우 자녀의 안전과 학교안내를 위해 학부모님이 당번제로 일정시간 학급에서 봉사를 합니다. 이는 유치부 전학년 전학급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초등 1 학년 1 학기가 되면 학급대표 학부모님은 학급 담임과 논의해 학급봉사를 결정합니다. 초등 1 학년 2 학기 부터 학부모 당번봉사는 하지 않습니다.

6.3 학급 자체내에서 학부모님이 임의대로 학급이나 담임교사를 위해 일괄 학습자료비를 모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교사의 선물을 위한 상품권도 금지합니다. 다만 학생을 위한 간식, 학교를 위한 물품 후원 및 후원금은 학교에 공식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6.4 학급에서 일어나는 학생간이나 학부모간 갈등은 먼저 학급담임이 조정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장에게 알려 조정하고 최종 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수업 중이나 학교 생활 중 학급친구나 담임교사에게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교생활을 침해했을 때 해당 학생은 담임 교사의 주의 및 상담을 3 회 순차적으로 받습니다. 이 후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에게 보고 합니다. 학교장은

학생 및 학부모와 상담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에 알려 학생의 재학 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7. 입학금 및 수업료 세부 규칙

입학 및 수업료 세부규칙				
부서	학사일정	해당 부서	세부	기타
교무부	입학	전체부서	온라인 사전 입학 신청으로만 가능	
		유치부	3 월과 9 월에만 입학 가능	
			3 월 1 일 기준: 만 4 세부터 입학 가능	
		초등부	학생정원 여유 있을 시, 상시 입학 가능	
		한국어부	한국어부 입학 전 필요시 청강 1 회 가능	
		초상권 사용 동의	초상권 사용 동의서*	교지,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별도 체크 동의 구함으로 변경 예정
		학년변경 월반 (입학시)	학급 정원 가능할 경우 입학 테스트 거쳐, 담임 동의 후 입학이 가능	현재 담임교사와 월반할 학급의 담임교사 승인: 월반 학급의 담임 주관 테스트 시행 후 최종 학교장이 승인
		학급변경 (입학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년 내 학급변경은 불가	
	재학	재학중 월반	고 2 > 고 3 월반 불가 (현 출석규정에 의거)	고 2 월반을 제외하고 타학년의 경우, 나이와 뛰어난 성적으로 현 수업에 흥미를 잃어 수업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1)현재 담임의 소견 2)월반 학급의 정원 재고와 월반할 학급의 담임이 학생의 성적 테스트를 거쳐 3) 최종 학교장 승인
		처리	담임의 서명, 도서부 연체 확인 완료 후 학교장 서명으로 확인 (이메일 및 전자서명 가능)	
	휴학	기한	월말 기준으로 한달의 Pre-notice 기간이 있음	수업료:6 월 말 휴학의 경우, 7 월까지 학비 출금

	복학	교환학생 O	한국 및 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재학하다 다시 복학하는 경우 입학금 면제	
		교환학생 X	개인 사정으로 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입학금 재 납부	
	졸업	일반 고등 3 년	고등 3 년 재학 중 6 월에 Abitur 를 마치고 해당년 9 월에 대학입학, 해외유학, 직장 취업 등으로 한국학교 출석이 어려운 경우, 학교필요 서류 제출 후 (Abiturzeugnis, Zulassung)등을 제출하고 1 학기 출석률이 2/3 이상일 경우, 익년 2 월에 졸업 예정임을 알리는 졸업 예정 증명서를 받아 해당 학생이 한국학교 계속 출결여부 결정 -> 익년 2 월에 졸업장 수여	
		한국어 고등부	고 3 졸업규정과 동일	출석규칙 참조
	특별활동	특별활동	태권도 및 미술반 대상:초등부부터 수업신청 가능	
	증명서 (교무)	재학, 재직, 졸업증명서	발급 비용 없음	
	서무부	출금	월별 출금 (연 12 회 출금)	
		학생 입학금	입학 시 1 회 100 유로	입학 해당 월 15~20 일 사이에 1 회 학비와 다른 날 출금
		국어, 한국어 수업료	월 35 유로	매월 15~20 일 사이에 출금, 입학금과 다른 날 출금
		오후초등 과목 수업료	월 25 유로	국어수업과 합산되어 출금
		특별활동 수업료	월 25 유로	국어수업과 합산되어 출금
		교사자녀	입학금 및 국어, 한국어 수업료 면제, 오후수업 및 특별활동	

			수업료는 신청제이며 납부	
		다자녀 수업료	*셋째 자녀부터 학비 및 입학금 50 프로 면제 (셋째자녀 이상)	* 해당 학부모가 서무부에 자녀 입학시 알려야 50% 면제 가능
		여름방학	7,8 월에도 학비는 납부 (학기중과 동일 금액)	
	학비 환불 규정	환불	학교에서 인정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 서무부에서 가능	6 월 말 휴학의 경우, 7 월까지 학비 출금
	학비 미납	미납시	3 개월 이상 미납 시 서무부에서 3 회 연락 시도 후 자동 휴학처리	
	증명서 (서무)	연말정산 서류	2 유로 (해당연도에 따라, 한 가족 당)	

이 밖에 프랑크푸르트 한국학교에는 학교 각 기관의 전반적인 부분을 규정하는 학교 정관과
교사와 직원의 근무를 규정하는 교사 및 직원 수칙 및 교사 메뉴얼이 있습니다.

위 교칙은 2025 년 11 월 1 일 부터 무기한 유효합니다.

사단법인 프랑크푸르트 한국학교 운영위원회

사단법인 프랑크푸르트 한국학교(2025.11.01)